

2002년 7월 1일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경제제도 및 법규 -



재정경제부

2002년 7월 1일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

-경제제도 및 법규-

재정경제부

2002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< 目 次 >

1. 주요이슈

- 금융기관의 토요일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/ 1
-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/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
- 산업기술 연구·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지원/ 2
-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
-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/ 3
-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보 의무화
- 거주자의 대외 지급에 대한 제한 완화
-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/ 4
-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
- 인터넷 조달 단일창구 구축 등 공공조달의 전자화/ 5
- 문화지구내 금지 및 제한업종 지정
- 농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
- 농촌 투자 유치센터 설치·운영/ 6
-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
- 중고·유휴설비 구입 특례자금 지원/ 7
-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행위 금지/ 8
-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
- 중산·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
-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/ 9

2. 부처별 개선사항 목록 / 11

이 자료는 2002.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부처별 경제제도 및 법규 개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.

< 주요이슈 >

금융기관의 토요일 근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

- ◆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.

【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☎ 503-9208】

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

- ◆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.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.

【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☎ 503-9221】

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

- ◆ 2002. 7. 1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%에서 20%로 인상됩니다.
 - 정부는 1988년 한미 담배양해록을 체결하여, 담배수입을 허용하면서 담배 제조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
 -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2001. 7. 1부터 10%의 관세를 부과하고, 매년 10%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. 7월부터 40%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수입담배에 대하여 일시에 40%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 수출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.

【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☎ 503-9234】

산업기술 연구·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

- ◆ 2002. 7. 1부터 1년간 국내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에서 수입하는 산업기술 연구·개발용품 중 습도측정기 등 29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 동 제도는 국내산업의 기술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설연구소, 연구 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하여 해당관세의 80%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
 - 현재 감면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288개 품목이 금년 6. 30자로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오존수생성기·이온발생기 등 61개 품목을 제외하고, 새로이 자기저항측정기·플라즈마발생기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여, 총 290개 품목을 지정한 것입니다.
 - 이번에 지정한 품목은 2003. 6. 30까지 수입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.

【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☎ 503-9231】

제조물 책임제도 시행

- ◆ 제조물책임법이 2002. 7. 1부터 시행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가 쉬워집니다.
 -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·재산(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)에 손해를 입은 제조물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-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을 입증해야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 -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, 손해발생,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.(무과실책임제도)
- ◆ 기업은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.
 -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쉬워지므로 기업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◆ 제조물책임법은 2002. 7. 1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물건부터 적용됩니다.

【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☎ 503-9060】

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

- ◆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인자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고,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◆ 한편 카드사의 불법,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고, 카드사가 제3자에게 신용 정보 제공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.

【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☎ 503-9261】

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보 의무화

- ◆ 은행, 보험 등 금융기관과 PC통신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조치를 취하기 1월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
- 동 조치로 개인은 신용불량자 등록예정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므로 등록사유를 해소 할 수 있는 시간과 소명 기회를 갖게 됩니다.

【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☎503-9254】

거주자의 대외지급에 대한 제한 완화

- ◆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및 해외여행경비, 체제·유학비의 대외지급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인 및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.
-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(증여성송금 건당 5만불, 해외체제·유학비 건당 10만불) 및 여행경비의 휴대반출(건당 5만불)에 대해 한국은행 확인·신고제도를 폐지하여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하였습니다.
- 다만, 증여성 송금(연간 1만불 초과), 해외체제·유학비(연간 10만불 초과) 송금내역 및 여행경비 휴대반출 내역(건당 1만불 초과)의 국세청 통보제는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존치합니다.

【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☎2110-2376】

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

◆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및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.

-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(대고객 현물환 매매는 제한)하고, **일정요건*** 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. 다만, 신용위험과 연계된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개인을 상대방으로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.

*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%이상,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

◆ 시장참여기관을 증가시켜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, 증권사의 가격변동 리스크 헤지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수익원 다변화등에 기여하게 됩니다.

【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☎2110-2376】

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

◆ 현재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만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,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합니다.

- 2002년 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(국세)을 신고·납부하고 민원서류의 신청·발급, 세금상당 등을 받을 수 있는 홈택스(Home Tax)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.

〈 홈택스 서비스 추진일정 〉

제공시기	주요 서비스 내용
2002. 4월부터	· 사업자등록증명, 납세증명전자발급 ·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전자고지·납부
2002. 7월부터	· 부가가치세, 원천세 전자 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
2002.10월부터	·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납세사실증명, 소득금액증명 전자발급 · 고지하는 모든 세금전자고지·납부 · 주세, 특별소비세 전자신고 · 전자 세무안내 및 홍보

【국세청 납세홍보과 ☎379-1392】

인터넷 조달 단일창구 구축 등 공공조달의 전자화

◆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하여 기업이 공공조달에 참가하는데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.

- 인터넷 조달단일창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정보를 일괄제공하고, 한 번 등록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.
- 입찰참가에서 계약,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행정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관 방문 횟수가 대폭 감소됩니다.
-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공공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구비서류 제출을 폐지합니다.

【조달청 정보기획과 ☎(042)481-7148】

문화지구내 금지 및 제한 업종 지정

◆ 문화지구 내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명문화 하였습니다.

-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 등 문화업종이 밀집되어 있거나,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·관리하기 위해 시·도 지사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지구입니다.
- 금지 및 제한업종은 단란주점, 유흥주점 기타 시·도지사가 조례로 금지 및 제한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.

농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

◆ 농업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 중 금리가 5%인 일부사업의 이자율이 오는 7월1일부터 현행보다 1%p 인하됩니다.

- 현재 이자율이 5%로 운영중인 사업중 후계농업인육성, 농산물수출촉진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것과 농업종합자금,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.

- ◆ 영어자금 등 현행 5.0~5.5%인 22종의 수산정책 자금의 대출금리가 1%p 인하됩니다.

【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 ☎500-1595,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☎3148-6811】

농촌 투자유치 센터 설치·운영

- ◆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- 농림부, 농업기반공사, 농협 등 관계기관·단체직원(9명,3개팀 : 운영홍보·자본유치·농촌관광)으로 구성되며, 7월초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.
-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E-mail, 전화·방문응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.

- ◆ 농촌투자유치센터는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.

(예시)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및 농촌주택 소유, 체험·체류형 농촌관광사업, 자연휴양림사업의 민간투자유치, 관광·체육시설, 실버타운, 교육·연수·수련시설 등의 농촌유치 등

【농림부 개발정책과 ☎500-1957】

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

- ◆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기준을 전기사용량 300kwh에서 400kwh로 상향 조정하여 월 전기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평균 5% 인하하였습니다.

- 이는 컴퓨터, 냉장고, 에어컨등 가전제품 사용증대로 일반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누진율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일반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입니다.
- 금번 누진율완화로 평소 약 170만여 가정이 혜택을 보며, 특히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은 전체 수용가의 18%인 약 300만 가정이 혜택을 보게됩니다.
- 400kwh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은 월 약 5,000원의 경감혜택이 있습니다.

(사용금액 : 종전 70,260원 → 변경 65,130원)

【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☎503-9501】

중고·유희설비 구입 특례자금 지원

- ◆ 2002. 8월부터 중고설비 구입자금을 후취담보 외에 추가부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히 영세 제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에 기여하게 됩니다.
- 자금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구조개선자금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며,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중고설비유통업체는 제외됩니다.
- 자금지원조건은 연리 5.9% (변동금리), 상환기간은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, 대출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연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
- 지원방법은 1억원 이하 대출은 후취담보와 신용으로 지원하고, 1억원 이상은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서를 첨부하여 지원하며,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.

【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 ☎(042)503-7930】

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

- ◆ 재래시장의 건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시장의 재개발·재건축을 지원합니다.
-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시장 재개발·재건축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3/5이상으로 완화 (주택재개발:2/3이상, 주택재건축:4/5이상) 합니다.
-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합니다. (일반주거지역:150~300%→400~700%, 준주거지역 : 350~600%→450~700%)
- 도시계획절차 간소화(절차 8단계 소요기간 2년 → 3단계 6개월), 세제혜택(양도세, 취득세, 등록세, 과밀부담금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), 자금지원(시장당 총사업비의 75%내에서 100억원) 등이 실시됩니다.

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

- ◆ 금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의 정치관여 행위가 금지됩니다.
 -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 -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·직원과 중앙회장 겸직이 금지됩니다.
 - 조합·사업조합 및 연합회 설립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설립 최저받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, 전국조합은 15인에서 30인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조합설립 최저받기인 수 규모를 확대합니다.

【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 ☎(042)503-7930】

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

- ◆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.
 -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·희귀질환자,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합니다.
 - 중·고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수업료·교재대외에 학용품비를 금년 7월부터 추가 지원(17만명, 학기당 2만원) 합니다.
- ◆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제도가 전면 확대됩니다.
 - 장애인·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의 10~15%에서 30%로 상향 조정하고,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시 본인부담 보험료의 50%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.

【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☎503-7565】

중산·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

- ◆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환조건도 대폭 완화됩니다.
 - 지원자금의 상환조건을 현행 1년거치 19년 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 - ※ 지원규모 : 1만세대 · 3,500억원('01) → 1.5만세대 · 5천억원('02)
- 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☎504-9133】

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

- ◆ 2002. 7. 1부터 전화권유판매,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.
 -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·판매하는 점을 감안, 방문 판매 규정을 준용합니다.
 - 학습지,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범위가 제한됩니다.
- ◆ 방문·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 14일로 통일됩니다.
 - 통신판매(전자상거래)의 무조건 청약철회(7일)가 인정됩니다.
 -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- 다단계판매원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인정됩니다.
- ◆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 -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 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◆ 2002.11.1부터 『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』이 시행됩니다.
 -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, 임원의 경력,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 -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-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,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,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사업자 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·운영됩니다.

◆ 표시·광고시 반드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분야와 업종이 추가됩니다.

- ‘유전자 변형물질’ 분야의 적용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
 - 식품 제조·판매업 및 농수산물 생산·판매업 :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
- ‘상품권’ 분야의 적용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
 - 해당 모든 업종 : 상품권 권면금액 중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 기준,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
- ‘결혼정보업’의 중요정보 :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·추가요금 등 요금체계, 중도 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
- ‘영화업’의 중요정보 : 상영 등급

【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☎503-9117】

부처별 개선사항 목록

<目 次>

재정경제부(조달청)	12
문화관광부	20
농림부(산림청)	22
산업자원부(중소기업청)	27
보건복지부	30
환경부	32
건설교통부	36
해양수산부	38
공정거래위원회	40
금융감독위원회	46

< 재정경제부 >

번호	제 목	전 종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부동산양도 신고제도폐지	○부동산양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였 다는 증빙이 있어야 양수인이 등기 가능	<폐 지> * 02. 7. 1부터 폐지	○소득세법 제165조 (2002.7.1)	재 산 세 제 과 ☎503-9221
2	○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대상 에 전자화폐매 출분추가	○ 개인자영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매출액의 2%를 공제	○사이버공간에서 전자 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도 공제 대상에 추가	○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(2002.7.1)	소 비 세 제 과 ☎503-9224
3	○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	○종합유선방송·중계 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	○과세전환	○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(2002.7.1)	소 비 세 제 과 ☎503-9224
4	○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예식 장업 등 과세 전환	○농·축·수협등 정부 업무대행단체의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·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-다만, 소매업·음식 점업·숙박업·부동 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	○과세대상업무에 예식 장업, 육탕업 추가	○ 조 세 특 례 제 한법시행령제 106조 (2002.7.1)	소 비 세 제 과 ☎503-9224
5	○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	○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출대금 입금증명서, 수출신고 필증, 수출실적명세서 중에서 선택	○수출실적 명세서로 일원화	○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(2002.7.1)	소 비 세 제 과 ☎503-9224
6	○유류세율 적용 의 특례 -경유 -등유 -중유 -LPG부탄	○적용기간(02.1.1 ~ 02. 6. 30) - 191원/ℓ - 82원/ℓ - 3원/ℓ - 114원/kg	○ 적용기간(02.7.1~ 03. 6. 30) - 232원/ℓ - 107원/ℓ - 6원/ℓ - 203원/kg	○교통세법 제2조, 특별 소비세법 제 1조 (2002.7.1)	소 비 세 제 과 ☎503-9224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7	○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신청 의무화	<신 설>	○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·면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지급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	○ 법인세법 제98조의4, 소득세법 제156조의2 (2002.7.1)	국 제 조 세 과 ☎503-9227
8	○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	<신 설>	○ 외국법인에게 소득(국내원천소득중 이자, 배당, 사용료, 유가증권 양도소득, 기타소득등)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 ○ 제출시기 : 익년 1월말 (근로·퇴직 : 익년 2월말)	○ 법인세법 제120의 2조, 소득세법 164의 2조 (2002.7.1)	국 제 조 세 과 ☎503-9227
9	○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	○ 10%	○ 20%	○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(2002.7.1)	산 업 관 세 과 ☎503-9234
10	○ 산업기술연구·개발용품 관세감면 규칙개정	○ 대상물품 : 288개 품목	○ 대상물품 : 290개 품목 (재지정 227개, 신규지정 63개 품목)	○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(2002.7.1)	관 세 제 도 과 ☎503-9231
11	○ 금융권 토요일 휴무일의 국채원리금 지급	<신 설>	○ 금융권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토요일 직전영업일에 지급 -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는 민법 제161조에 의거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에 지급	○ 국채법시행령 제23조, 제24조 ○ 토요일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지급지침 (2002.7.1)	국 고 과 ☎503-9280
12	○ 금융권 토요일 휴무일의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	<신 설>	○ 해당 토요일 직후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조치 적용 배제	○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30조 ○ 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 및 지급에 대한 지침 (2002.7.1)	회 계 제 도 과 ☎503-9289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3	○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 통보 의무화	<신 설>	○ 금융기관등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조치를 취하기 1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함	○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(2001.12.31),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 (2002.5.20)	은행 제도 과 ☎503-9254
14	○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 금융상품업무 허용	<신 설>	○ 증권사에 대해 유가증권등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설계·개발 또는 판매 (dealing, brokerage) 를 허용	○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 조의2 (2002.7.1)	증권 제도 과 ☎2110-2363
15	○ 신용카드가맹점 범위에 결제대행업체 (Payment Gateway) 추가	<신 설> <신 설>	○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 (PG)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함 ○ 신용카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 및 하위쇼핑몰의 신용정보를 카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	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호 (2002.7.1) ○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(2002.7.1)	보험 제도 과 ☎2110-2360
16	○ 신용카드업 영위요건에 대한 규제개선	○ 백화점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허가 필요 ○ 동일 기업집단내 복수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 제한	○ 등록제로 전환 <폐 지>	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(2002.7.1) ○ 동법 제6조 제3항 (2002.7.1)	보험 제도 과 ☎2110-2360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7	○카드회원등에 대한 카드회사 책임 강화	○ 위·변조 카드의 사 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원이 부담 해야 하는 고의·중과 실을 약관에서 정하 고 있음 <신 설>	○ 고의·중과실의 범 위를 비밀번호를 누 설한 경우와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한 경우로 제한하여 소비자 보 호를 강화 ○ 회원이 카드이용금 액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제기시 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 대금 청구를 제한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8 (2002.7.1) 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16조 제8항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18	○무분별한 신 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	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○ 신용카드 발급기준 -18세이상인자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 력이 확인되는 자 -미성년자의 경우 법 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 할 것 ○ 부당한 카드회원 모 집행위 금지 -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-가두모집행위금지 -방문모집행위 원칙적 금지(사전동의를 얻 거나 사업장을 방문 하는 행위는 예외적 으로 허용) ○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갱신· 대체 발급할 경우 사전에 회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6조의7제1항 (2002.7.1) 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6조의7제2항 (2002.7.1) 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시행령 제6조의 6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9	○카드 부정사용 및 위·변조에 대한 처벌 강화	○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부정사용(속칭 카드깡)을 한 경우 에만 처벌 ○ 카드를 위·변조하 거나 위·변조한 카 드를 판매하거나 사 용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	○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없이 카드를 부 정사용한 경우도 처 벌할 수 있도록 함 ○ 행사할 목적으로 위· 변조된 카드를 취득한 자와 카드 위·변조를 예비음모하는 자에 대 하여도 처벌(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하도록 함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20	○ 신용카드 수 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	<신 설>	○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시 준수할 사 항을 금감위가 정하도 록 함	○ 여신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제7조 의2 제2항 제7호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21	○ 신용카드 이용 자 보호 강화	<신 설> <신 설>	○ 카드사의 불법·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 ○ 카드회사가 제3자에게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강화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5호(2002.7.1) 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4호 및 감독 규정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22	○ 현금대출 위주 의 영업행태 개선	<신 설>	○ 카드회사의 현금대 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 무에 따른 채권 합 계액의 50%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제한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23	○ 직불카드 활 성화 방안	○ 직불카드 이용한도 1회 50만원, 1일 100만원	○ 직불카드 이용한도 폐지	○ 여신전문금융 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24	○ 30대 기업집단 원용규제의 개선	○ 30대 기업집단 소속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 여신제한	○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 여신 금지하도록 대상 확대	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(2002.7.1)	보 험 제 도 과 ☎2110-2360
25	○ 제조물 책임법 시행	○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시 손해발생, 인과관계 뿐아니라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 입증 필요	○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, 손해발생, 인과 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	○ 제조물 책임법 (2002.7.1)	소 비 자 정 책 과 ☎503-9060
26	○ 거주자의 대외 지급 제한 완화 ○ 해외체제·유학비	○ 증여성 송금 -5만불초과 : 한국은행 사전확인 ○ 일반 해외여행경비 -1만불~5만불 : 세관 신고 -5만불 초과 : 한국은행 신고 ○ 휴대반출 -10만불 이하 : 외국환은행 확인 -10만불 초과 : 한국은행 신고 ○ 10만불 초과 송금 : 한국은행 사전 확인	○ 한국은행 사전확인 폐지 ○ 1만불 초과 : 세관신고 ○ 휴대반출 - 지정거래외국환행 확인(세관신고 생략) ○ 송금 : 한국은행 사전 확인 폐지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4-3조 (2002.7.1) ○ 외국환거래규정 제5-11조 (2002.7.1) ○ 외국환거래규정 제4-3조 및 제5-11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27	○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 허용	○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에 한해 다자간 상계 허용	○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모든 거래에 대해 다자간 상계 허용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5-4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28	○ 수출입대금 결제시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	○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시 수출입 신고 수리필증 원본만을 지급증빙서류로 인정	○ 건당 10만불 이하인 수출입거래의 경우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 또는 전자문서도 지급증빙서류로 인정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4-2조 및 제4-7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29	○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 거래의 국내 결제한도 폐지	○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경상거래의 국내 결제한도 : 건당 5천불로 제한 - 건당 5천불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	○ 결제한도 폐지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5-11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30	○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	○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참여 금지	○ 증권·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허용 - 대고객 현물환매매는 계속 제한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2-5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31	○ 증권사의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	○ 증권사의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 금지	○ 증권사의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-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2-12조 및 제7-40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32	○ 원화 및 자기앞수표의 반출입 자유화	○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통화의 반출: 한국은행 허가 - 자기앞수표의 반출: 한국은행허가(휴대 반출:세관허가 가능) ○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통화 반입: 한은허가(휴대 반입: 세관신고) - 자기앞수표의 반입: 한은허가(휴대반입: 허가 가능)	○ 대외지급수단, 내국통화 및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만불 초과 반출: 세관신고 ○ 대외지급수단, 내국통화 및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만불 초과 반입 : 세관신고	○ 외국환거래규정 제6-2조 및 제6-3조 (2002.7.1)	외 환 제 도 과 ☎503-9277

< 조달청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조달 단일 창구 구축	○각 기관별로 입찰 참가 등록 ○관보나 신문을 통한 입찰정보 제공	○조달 단일창구에 일회 등록으로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 ○인터넷을 통한 공공 입찰정보 일괄 제공	○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○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(2002. 9월)	정 보 기 획 과 ☎042) 481-7148
2	○조달청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-디자인상품 우대 -평가항목 조정 (실적기준→평가기준) -면제기준 삭제	○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- 중소·벤처기업으로서 KT, NT, EM, IT등 인정 -기계장치비 및 연구 개발비 모두 심사 - 이행실적에 의한 적격 심사 면제기준 적용	○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-GD, 의장등록 인증 물품 추가 -기계장치비 또는 연구 개발비 선택심사 -이행실적에 의한 적격 심사 면제기준 규정 삭제	○조달청물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(2002.7.1)	구 매 제 도 과 ☎042) 481-7212
3	○조달청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항목 추가	○심사항목(6개) -부채비율 -유동비율 -고정자산 대 -고정부채비율 -매출액 순이익율 -매출액영업이익율 -총자본회전율	○심사항목(9개) -부채비율 -유동비율 -차입금 의존도 -영업이익대비이자 -보상배율 -매출액 영업 이익율 -매출액 순이익율 -총자산 순이익율 -총자산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 -자산회전율 ※1000억원 이상 평가시 3개 항목 추가 -신용평가등급 -감사인 의견 -영업기간	○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사전 심사세부기준 (2002. 7. 1)	계 약 과 ☎042) 481-7338

< 문화관광부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문화지구 내 금지·제한 업종 규정	<신 설>	○ 문화지구 내 금지· 제한 업종 규정 -문화지구 :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 등 문화업 종이 밀집되어 있거나,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역을 체계적으로 육성· 관리하기 위해 시·도지 사가 조례에 의해 지정 한 지구 -금지·제한업종: 단 란주점, 유흥주점 기 타 시·도지사가 조 례로 금지·제한하는 업종	○문화예술진흥 법 제10조의 2	문 화 정 책 과 ☎3704-9410
2	○한국문화콘 텐츠진흥원 설립	<신 설>	○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(디지털문화 콘텐츠의 응용기술 개 발·지원, 인력양성, 문화원형구축, 사업자 지원 등) 수행	○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	문 화 산 업 정 책 과 ☎3704-9610
3	○문화산업기술 개발사업지원	<신 설>	○문화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계획수립 및 사업자 지원	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	문 화 산 업 정 책 과 ☎3704-9610
4	문 화 산 업 진 흥 시설의 지정	<신 설>	○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제도를 도입하 여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지원	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8조	문 화 산 업 정 책 과 ☎3704-9610
5	문 화 상 품 의 유통활성화 촉진	<신 설>	○문화상품에 국제표 준바코드 표시, 품질 인증 및 디지털문화 콘텐츠에 식별자 부 착 제도 도입 등	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· 13조	문 화 산 업 정 책 과 ☎3704-9610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6	○ 청소년수련 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화	<신 설>	○ 수련시설의 이용자 에게 발생하는 생 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보 험가입을 의무화 함	○ 청소년기본법 제33조	청소년정책과 ☎3704-9910

< 농림부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특등신설, 등급세분화 등 벼검사규격 개정	○ 수매벼의 90% 이상이 1등으로 판정되어 품질차별화 미흡 -1등: 제현율 75%이상 -2등: 제현율 70.0%이상 -등외: 제현율 65.0% 이상	○ 특등을 신설하고, 1등 및 2등의 제현율 최저한도를 종래의 일반 벼 규격으로 상향 조정 -특등: 제현율 82.0%이상 -1등: 제현율 78.0%이상 -2등: 제현율 74.0%이상 -3등: 제현율 65.0%이상 ○ 특등에 대한 피해립 등 규격 강화 -피해립: 4% → 1%이하 -이종곡립.이물: 0.5% → 0.2%이하	○ 농산물검사 기준고시 (2002.7.1)	식량정책과 ☎500-1764
2	○ 양곡가공업 등록, 신고, 영업정지, 등록취소 업무 이양	○ 시.도지사 사무	○ 시장·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 사무	○ 양곡관리법 (2002.7.15)	식량정책과 ☎500-1764
3	○ 인삼류(미삼, 잡삼) 검사 의무화	○ 인삼류 검사에서 미삼, 잡삼 등은 검사 제외	○ 미삼, 잡삼 등 검사 의무화	○ 인삼산업법 (2002.7.1)	채소특작과 ☎500-1867
4	○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조사 권한 확대	○ 국가의 고유사무	○ 국가와시·도 공동사무	○ 농산물품질 관리법 (2002.7.15)	식품산업과 ☎500-1853
5	○ 한우다산 장려금 지급대상 변경	○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	○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인공수정에 의하여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	(2002.7.1)	축산경영과 ☎500-1904
6	○ 거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	○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하는 자	○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거세하는 자	(2002.7.1)	축산경영과 ☎500-1904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7	○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 확대	<신 설>	○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제주도지사의 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제주도내 골프장 시설 용지를 초지전용대상에 추가하고 대체초지 조성비중 100분의 50 면제	○ 초지법 (2002.8.13)	축 산 경 영 과 ☎500-1904
8	○ 초지조성허가 또는 전용허가 신청서류 간 소화	○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허가 신청서에 토지 대장 등본 첨부	○ 토지대장등본 첨부 생략	○ 초지법 (2002.8.13)	축 산 경 영 과 ☎500-1904
9	○ 계란 위생검사 실시	<신 설>	○ 축산물의 범주에 식 용란을 포함하여, 계란위생검사 실시	○ 축산물가공 처리법 (2002.7.1)	가 축 위 생 과 ☎500-1937
10	○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(HACCP) 및 위생관리기준 (SSOP) 미시행 도축장 처벌 강화	○ 미시행 도축장 : 과태료 30만원 처분	○ 과태료 처분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	○ 축산물가공 처리법 (2002.7.1)	가 축 위 생 과 ☎500-1937
11	○ 냉장육의 냉동 육 전환 판매 허용	<금 지>	<허 용>	○ 축산물가공기준 및성분규격고시 (2002.7.1)	가 축 위 생 과 ☎500-1937
12	○ 동물병원 개설 및 관리업무 담당기관 변경	○ 시·도지사에게 신고	○ 시장·군수 또는자치 구청장에게 신고	○ 수의사법 (2002.7.1)	가 축 위 생 과 ☎500-1932
13	○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개량사업 시행절차 간소화	○ 신규설치와 동일하게 시행계획의 공고·열람 등의 절차 요구	○ 시행계획의 공고·열람 절차 등 생략	○ 농어촌정비법 (2002.7.15)	개 발 정 책 과 ☎500-1995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4	○홈페이지개설 농가 교육체계 변경	○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중앙집체교육(2박3 일간 16시간, 합숙)	○ 전국 22개 농업정보 119대학에서 관할지 역별로 분산 집체교육 실시(2일 12시간, 비 합숙)	○농어촌정비법 (2002.7.1)	정 보 화 담 당 관 실 ☎500-1636
15	○농업정책자 금 금리인하	○ 연리 5%	○연리 4% -후계농업인육성, 농 산물 수출촉진, 농업 종합자금, 농축산경 영자금 등 일부사업	(2002.7.1)	투 자 심 사 담 당 관 실 ☎500-1595
16	○농업투자유 치센터 설치 및 운영	<신 설>	○농림부, 농업기반공 사, 농협 등 관계기 관 및 단체직원(9명, 3개팀)으로 구성 -인터넷 홈페이지 개 설, e-mail, 전화, 방 문응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민의 농촌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	(2002.7.1)	개 발 정 책 과 ☎500-1595

< 산림청 >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보전 임지내 농가주택 허용 기준 강화	○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와 관계없이 토지사용승 락서만 첨부하면 보전 임지를 농가주택으로 전용 가능	○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림에 농가 주택을 시설하는 경 우로서, 농림어업 경 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·산림 등이 소 재하는 시·군 또는 이에 연결한 시·군 에 설치하는 경우에 보전임지 전용을 허가	○ 산림법시행령 개정중 (2002.9.1예정)	산 지 관 리 과 ☎(042) 481- 4175
2	○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제 한기간 조정	○ 보전임지 전용허가 를 받아 목적사업 준 공후 3년 이후에는 다 른 용도로 변경 가능	○ 보전임지 전용허가 를 받아 목적사업 준 공 후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 도록 제한	○ 산림법시행 령 개정중 (2002.9.1예정)	산 지 관 리 과 ☎(042) 481-4175
3	○ 벌채허가 기준 강화	< 신 설 >	○ 벌채기준을 새로 마 련하여 이에 적합 한 경우에만 허가	○ 산림법시행 규칙 개정중 (2002.10.1예정)	산 림 소 득 과 ☎(042) 481-4135
4	○ 형질변경지 복구설계서 작성자의 자 격기준 마련	○ 산림형질변경지 복 구를 위한 설계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이 없어 누구나 복구 설계서 작성이 가능	○ 형질변경지 복구설 계서를 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 한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토록 개선	○ 산림법시행 규칙 개정중 (2002.10.1예정)	산 지 관 리 과 ☎(042) 481- 4185
5	○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한	< 신 설 >	○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목축·종축용, 광업용 및 관광객이용·숙 박시설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제한	○ 산림법시행령 개정중 (2002.9.1예정)	국 유 림 관 리 과 ☎(042) 481-4171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6	○ 2급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하향조정	○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임도 시설·사방사업·형질변경·채석·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·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·설계·시공 및 시공지도	○ 공사금액의 규모를 5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	○ 산림법시행규칙 개정 (2002.10.1예정)	산지관리과 ☎(042) 481-4185
7	○ 산림내 관상수 재배 허용면적 확대	○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㎡ 미만으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신고로 가능	○ 신고에 의한 산림내 관상수 재배 허용면적을 3만㎡ 미만까지 확대	○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중 (2002.10.1예정)	산지관리과 ☎(042) 481-4185
8	○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면제제도 도입	< 신 설 >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형질변경면적이 660㎡ 미만의 경미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면제	○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중 (2002.10.1예정)	산지관리과 ☎(042) 481-4185
9	○ 산림관련인·허가 신청시 제출도면 축척 완화	○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, 벌채허가·신고,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도면의 축척을 6천분의 1로 한정	○ 도면의 축척을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까지로 완화	○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중 (2002.10.1예정)	산지관리과 ☎(042) 481-4175 사유림지원과 ☎(042) 481-4195 산림소득과 ☎(042) 481-4135

< 산업자원부 >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특정거래 인정대상 축소	○ 외국인도수출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무환 수출도 특정거래 인정 대상	○ 외국인도수출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무환 수출은 특정거래 인정 대상에서 제외	○ 대외무역 관리규정 (2002.7월말예정)	무역정책과 ☎503-9432
2	○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	○ 누진제 강화	○ 300~400kwh단가인하 308.00원 → 256.70원 401~500kwh단가인하 405.70원 → 376.80원	○ 전기공급약관 <별표1> (2002.6.1)	전기소비자보호과 ☎503-9501
3	○ 채광행위 지도·점검	○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채광계획에 따라 시행	○ 광업권자(조광권자 포함)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하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도·점검하고,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할 경우 시정을명함 -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권(조광권 포함)취소 -지도·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	○ 광업법 제49조 (2002.7.20)	자원개발과 ☎503-9662
4	○ 광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등 상향조정	<벌금형> 300만원→ 100만원→ <과태료> 200만원→ 100만원→ 50만원→	<벌금형> 3,000만원 상향 1,000만원 상향 <과태료> 500만원 상향 200만원 상향 100만원 상향	○ 광업법 제11조 내지 제116조 (2002.7.20)	자원개발과 ☎503-9662
5	○ 동일광상부 존광물의 등록 절차 간소화	○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출원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함	○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	○ 광업법 제33조의2 (2002.7.20)	자원개발과 ☎503-9662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6	○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광업권 취소의 예외인정	○ 사업휴지 인가없이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하거나, 채광계획 인가후 3년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광업권 취소	○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 또는 3년이상생산실적이 없는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광업권취소의 예외 인정	○광업법 제40조 (2002.7.20)	자 원 개 발 과 ☎503-9662
7	○조광권자에 대한 사업휴지인가제도 도입	○ 조광권자가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됨	○ 조광권자가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·도지사로부터 사업휴지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사업재개시에는 재개신고를 하여야 함	○광업법 제65조 (2002.7.20)	자 원 개 발 과 ☎503-9662

< 중소기업청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중고·유틸 설비구입 특 례자금 신설	<신 설>	○ 자금지원규모 300억원 · 자금지원조건: 연리 5.9% · 상환기간: 5년 · 대출한도: 총소요자금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연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	○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 제46조 (2002. 8월중)	중 소 기 업 청 기 업 진 흥 과 ☎503-7930
2	○재래시장 재 개발·재건 촉시용적률 상향조정	○ 일반 주거지역 : 150~300% ○ 준 주거지역 : 350~600%	○ 일반주거지역 : 400~700% ○ 준주거지역 : 450~700%	○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 래시장활성화 를위한특별조 치법시행령 제 23조 (2002.5.27)	중 소 기 업 청 판 로 지 원 과 ☎(042) 481-4477
3	○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정치 관여행위금지	<신 설>	○ 공직선거시 특정정 당 지지 행위금지 ○ 선거직공무원의 조 합, 연합회, 중앙회의 회장 및 임·직원 겸 직금지 ○ 조합설립 최저발기 인 수 규모를 확대 -지방조합 : 10인 → 15인 -전국조합 : 15인 → 30인	○중소기업협동 조합법제7조, 제8조, 제23조 제45조 등 (2002.7.1)	중 소 기 업 청 기 업 진 흥 과 ☎503-7930

〈 보건복지부 〉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기 일부 조정	○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마감일을 매달 10일 등으로 정함	○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매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를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함	○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4항및 동법시행규칙제41조제4호,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46조제3항 (2002.7.1)	보험 정책 과 ☎2110-6366 연금 정책 과 ☎2110-6400
2	○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	○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의 5% (월99만원 소득자일 경우 : 월 49,500원)	○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의 6% (월 99만원 소득자의 경우 : 월 59,400원)	○국민연금법 제75조 부칙 제4조 (2002.7월)	연금 정책 과 ☎2110-6400
3	○국민연금 등 4대보험 포탈사이트 서비스 개시	<신 설>	○ 4대보험 안내 및 연금가입이력, 진료내역 인터넷 실시	(2002.7월)	연금 정책 과 ☎2110-6400
4	○혈액관리업무 시설·장비 기준 신설	<신 설>	○ 채혈 등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	○혈액관리법 시행규칙 (2002.7.1)	보 건 자 원 과 ☎2110-6306
5	○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	<신 설> ○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10~15%임	○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급(반기별 2만원) ○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시 본인 실시부담 연금보험료의 50%를 소득공제 ○ 차상위계층 중 만성·희귀질환자에게 의급여 확대 ○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30%로 상향	○2002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 지침 (2002.7.1)	생활보장과 과 ☎2110-6191
6	○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마련	○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	○ 사설 재단법인묘지 등의 설치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, 기존의 공동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	○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, 시행령 제7조의2	노 인 복 지 정 책 과 ☎2110-6201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7	○ 상수원보호 구역내 대규모 납골시설의 설치제한	<신 설>	○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기존의 사원 경내, 개인, 가족 및 종종·문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 대규모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수질보전 등을 도모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	노 인 복 지 정 책 과 ☎2110-6201
8	○ 낙동강 등 5 대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대규모 묘지나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	○ 한강수계에 대해서만 대규모 묘지나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함	○ 낙동강·금강·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·공포('02.1.14)됨에 따라 이들 수계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은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100,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묘지나 납골묘(탑)의 설치를 제한하되, 개인, 가족 및 종종·문중 등의 소규모 납골시설의 설치에 허용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,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	노 인 복 지 정 책 과 ☎2110-6201
9	○ 개인묘지 설치시 거리제한규정의 보완	○ 개인묘지는 도로·철도·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함	○ 개인묘지설치의 경우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, 시행령 제11조 별표 2의 제1호 라목	노 인 복 지 정 책 과 ☎2110-6201
10	○ 장례식장임대료 산정기준 마련	<신 설>	○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 로 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임대료산정기준을 마련하고,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	○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, 제37조 제1항 제10호	노 인 복 지 정 책 과 ☎2110-6201

< 환경부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낙동강 등 수변구역지정 제도 도입	<신 설>	<p>○상수원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·고시</p> <p>-낙동강 : 양안 500m</p> <p>-금 강 : · 지천 300m(주민동의시) · 본류 500m(특별대책지역밖) 1,000m(특별대책지역내)</p> <p>-영산강 : · 500m(지천은 주민동의시)</p>	○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4조및제5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2	○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	<신 설>	○하천구역중 국·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(과용, 오용, 남용 제한)	○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6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3	○하천인접지역에 도시·산업단지·관광지 등 신규개발시 초지·녹지·인공습지 등 비점(非點) 오염저감시설 설치	<신 설>	○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 도시, 산업단지 등의 신규 개발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	○낙동강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4	○상수원 주변 토지매수	<신 설>	○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	○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8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5	○수질오염사고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	<신 설>	○낙동강유역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이 직접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○낙동강특별법 제18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6	○상수원관리 지역등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	<신 설>	○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·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	○낙동강특별법 제23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21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7	○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	<신 설>	○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	○낙동강특별법 제25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23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8	○물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	<신 설>	○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·금강·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·징수	○낙동강특별법 제32조 내지 제35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30조 내지 제33조 (2002. 7.15)	수 질 정 책 과 ☎504-9252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9	○먹는물 정수 처리기술기준 도입	<신 설>	○ 병원성미생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 기술기준 제도 도입	○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2 조제1항 별표1 (2002. 7.1)	수 도 관 리 과 ☎507-2454
10	○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규정	<신 설>	○수질기준초과시 검사주기단축·초과원인분석·시설개선 등 조치사항 규정	○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 조 제5항 (2002. 7.1)	수 도 관 리 과 ☎507-2454
11	○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	○ 병원성미생물의 관리 지표로 대장균군만을 이용	○ 대장균군 수질기준 강화(불검출/50ml→ 불검출/100ml) ○ “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”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여 분원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○수도꼭지의 대장균군 기준에 확률개념 도입	○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2 조제1항 별표1 (2002. 7.1)	수 도 관 리 과 ☎507-2454
12	○재사용 종량제 봉투 보급	<신 설>	○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제정	○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○재사용종량제 봉투사용대지침 (2002.7.1)	폐기물정책과 ☎504-9259
13	○1회용 비닐봉투 별도분리수거	<신 설>	○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	○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○1회용 비닐 봉투 분리수거 추진 지침 (2002.7.1)	폐기물정책과 ☎504-9259

번 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4	○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 거체계 개선	○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배출	○ 봉투 판매소에서 스 티커를 구입·배출 하거나, 전담 수거업 체에 의한 수거를 통해 주민편의 도모	○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 침 및 조례 ○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지침 (2002.7.1)	폐기물정책과 ☎504-9259
15	○마을단위 종 량제 도입	<신 설>	○ 마을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고, 처리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체계 도입	○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 침 및 조례 ○마을단위 쓰 레기 종량제 추진 지침 (2002.7.1)	폐기물정책과 ☎504-9259
16	○배출업소 관리체계 개편	○ 「산업단지내 배출 업소 관리권」은 지 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고, 그 밖의 업소는 자치단체에서 관리	○ 산업단지내외 구분 없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배출업소의 일 상적이고 정기적인 지도·점검업무 수행 ○ 중앙정부에서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화하여 상습위반업체,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기동 점검업무 수행	○대기·수질환 경보전법시행 령,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시 행령 (2002.하반기)	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☎504-9233

< 건설교통부 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장애인·노인 부양세대의 임대주택 입주	<신 설>	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시·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시중 전세 가격의 20~30% 수준인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	○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(2002.7.1)	주택정책과 ☎504-9133
2	○ 버스, 택시 신차충당제도 도입	<신 설>	○ 일정연한이 경과된 중고차는 버스, 택시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제 (버스 3년이내, 택시 1년이내)	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(2002.6.19)	운수정책과 ☎504-9147
3	○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및 댐 수몰민 이주지원금 확대지원	○ 신규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담당 200~300억 ○ 댐 수몰민 이주지원금으로 4인 가족기준 2,000만원 지급	○ 신규댐 정비사업 지원규모를 담당 300~500억으로 확대 지원하고,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존댐에 대하여도 200~3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비 지원 ○ 4인 가족기준 2,500만원으로 확대 지원	○ 댐지원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(2002.7.1)	수자원정책과 ☎504-9041
4	○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 강화	○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만원 부과	○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	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(2002.7.26)	교통안전과 ☎504-9151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5	○ 건설업 등록 기준 갱신신고	<신 설>	○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인력, 자본금, 시설 등에 대한 입증 서류를 갖추어 관할등록관청 (시,도 또는 시,군, 구)에 신고 다만, 건 설업등록기준중 보 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경과시 마다 신 고하여야 함	○ 건설산업기본법 (2002.7.26)	건 설 경 제 과 ☎504-9051
6	○ 건설공사 표지 게시 제도 및 공사실명제	<신 설>	○ 건설업자는 공사현 장에 공사명, 공사기간, 발주자, 시공자, 감 리자, 현장 기술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한, 공사 완공시에는 위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 구적으로 설치	○ 건설산업기본법 (2002.7.26)	건 설 경 제 과 ☎504-9051
7	○ 생애최초 주 택구입자금 상환조건 완화	○ 1년 거치 19년 상환	○ 3년 거치 17년 상환	○ 국민주택운용 및 관리규정 (2002.7.1)	주 택 정 책 과 ☎504-9133

〈 해양수산부 〉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TBT방오도료 사용 규제 확대	○ 연근해어선, 갑종선, 어망·어구 및 내항 여객선에 TBT방오 도료 사용금지	○ 내항화물선에도 TBT방오도료 사용 금지	○ 유해선박방오 도료국제협약 (2002.7.1)	해양환경과 ☎3148-6541
2	○ 선박투자회 사제도 도입	〈신 설〉	○ 선박투자회사를 설립 하여 민간투자자가 선박건조 투자 가능	○ 선박투자회사법 (2002.8.14)	해운정책과 ☎3148-6612
3	○ 연안여객선 승선권 인터넷 예약·예매 시행	○ 여객터미널 창구 매표	○ 인터넷을 통한 연안 여객선의 승선권 구입 가능	(2002.7.1)	연안해운과 ☎3148-6621
4	○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국고 보조	○ '01. 6월 또는 전년 동기기준 유류가격 인상시 인상분 지급	○ '01. 7월이후 인상된 유류비세액 누계분의 50% 지급	○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제10호의2 (2002.7.1)	연안해운과 ☎3148-6621
5	○ 항만시설사 용료 감면대 상 조정	○ 최근 1년간 무역항에 4회이상 입항한 선박 에 대해 선박입항료, 화물입항료, 접안· 정박료 10% 감면 ○ 울산, 마산에 취항하는 외항컨테이너 전용 선에 대해 선박입항료, 화물입항료, 접안· 정박료 80% 감면	○ 폐지 ○ 감면율 조정(80%→ 50%)	○ 무역항의 항만 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(2002.7.1)	물류기획과 ☎3148-6651
6	○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행	○ 영어자금 등 22종의 정책자금 -대출금리: 5.0~5.5%	○ 영어자금 등 22종의 정책자금에 대하여 1%P 인하 시행	○ 영어자금운용 고시 제2000- 92호 (2002.7.1)	수산정책과 ☎3148-6811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7	○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 제도강화	○ 낚시어선중 양식장 관리선 등은 항·포 구에 출입항시 신고 의무 없음 〈신 설〉 〈신 설〉	○ 모든 낚시어선은 승 객을 승선시켜 항포 구에 출입하는 경우 에는 이를 신고토록 함 ○ 낚시어선에는 승객 명부 비치의무 부과 ○ 낚시어선업을 폐업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 의무	○ 낚시어선업법 (2002.11.14)	어업정책과 ☎3148-6911
8	○ 양자강 보호 수역내 입어 어선 감축	○ 협정1년차('01.6.30~ '02.6.29)양자강 보호 수역에서 우리어선 650척 조업가능	○ 협정 2년차('02.6.30~ '03.6.29) 양자강 보호 수역내 조업척수는 협정 1년차조업척수 보다 251척 감축된 399척 조업 가능	○ 한·중어업협정 (2002.6.30)	어업교섭 지도과 ☎3148-6912
9	○ 어선건조· 개조허가 및 등록	○ 어선건조·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·도 지사가 수행	○ 어선건조·개조허가 및 어선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· 군·구에 이양	○ 어선법 (2002.7.15)	안전정책담 당관실 ☎3148-6312
10	○ 내항선박 안 전관리제도 개선	〈신 설〉	○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ISM Code(안전관리 체제) 도입·시행	○ 해상교통안전법 (2002.7.1)	안전정책담 당관실 ☎3148-6312

< 공정거래위원회 >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문·다단계 판매 및 통신 판매 (전자상거래) 청약철회제도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상행위” 목적의 거래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○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 -방문판매는 10일, 다단계 판매는 20일 이내 -통신판매는 상품의 훼손,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로 규정 ○ 소비자가 청약 철회시, 사업자는 “다음 영업일”이내에 환불 의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○ 방문 다단계 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통일 ○ 통신판매(전자상거래)의 무조건 청약철회 신규 도입 : 7일 *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 인정 ○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“3영업일 이내”로 연장 ○ 청약철회과정에서 결제업자의 협력의무 규정 -판매자가 환불거부시 소비자의 결제업자(신용카드업자 등)에 대한 협력요구권(상계를 통한 대금회수 등)을 명시 ○ 공정위가 거래당사자, 관계기관·단체의 의견을 들어 소비자 보호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-사업자가 동 지침과 다른 내용의 약관 사용시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3조 (2002.7.1) ○ 방문판매법 제8조, 제17조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(2002.7.1) ○ 방문판매법 제9조, 제18조, 전자상거래법 제18조 (2002.7.1) ○ 방문판매법 제9조, 제18조, 전자상거래법 제18조 (2002.7.1) ○ 방문판매법 제33조, 전자상거래법 제23조 (2002.7.1) 	<p>전자거래 보호과 ☎503-9012</p>

주: 방문판매법 ☞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, 전자상거래법 ☞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방문·다단계 판매 및 통신 판매(전자상 거래) 청약철회 제도개선	<p><신 설></p> <p>○ 사업자에 대한 지도·단속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이시·도지사에게 부여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○ 공정위가 거래당사자, 관계기관·단체의 의견을 들어 소비자보호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-사업자가 동 지침과 다른 내용의 약관 사용시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</p> <p>○ 공정위도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조사·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</p> <p>○ 영업정지, 형사벌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, 시정조치 및 과징금제도 도입</p> <p>○ 소비자보호 관련 인증·평가사업자로 하여금 인증·평가의 기준 등을 공시토록 함</p> <p>○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</p>	<p>○방문판매법 제33조, 전자상거래법 제23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37조,제42조, 제44조,전자상거래법 제26조, 제31조,제32조, 제34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39조, 전자상거래법 제29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43조, 전자상거래법 제33조 (2002.7.1)</p>	전자거래 보호과 ☎503-9012
2	○통신판매(전자상거래)분야 제도개선	<p>○ 직접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</p> <p><신 설></p>	<p>○매매의 중개만을 하는 경우에도 “중개자”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</p> <p>○소비자와 사업자가 사전약정한 주소로 전자문서 미송부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되,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인정</p> <p>○사업자에 의한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 강제 금지</p>	<p>○전자상거래법 제20조 (2002.7.1)</p> <p>○전자상거래법 제5조 (2002.7.1)</p>	전자거래 보호과 ☎503-9012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2	○통신판매(전자상거래)분야 제도개선	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○ 통신판매업자가 개인 정보를 제3자(배송업자 제외)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</p>	<p>○ 컴퓨터 등 기조작의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명시 -계약성립, 대금결제 등에 앞서 정정·취소의 기회제공</p> <p>○ 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 -위·변조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 및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</p> <p>○ 개인정보 위·변조 또는 도용시 당해 사업자의 확인 및 주의 의무 부과</p> <p>○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되 “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” 등에는 예외인정</p>	<p>○전자상거래법 제7조, 제13조 (2002.7.1)</p> <p>○전자상거래법 제8조, 제24조 (2002.7.1)</p> <p>○전자상거래법 제6조, 제11조, 제21조 (2002.7.1)</p>	전자거래 보호과 ☎503-9012
3	○방문·다단계 판매분야 소비자 보호제도	<p>○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일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○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청약철회 또는 공탁 제도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담보</p>	<p>○ 방문판매에 준하는 소비자보호규정 적용</p> <p>○ 계속거래·사업권유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 추가</p> <p>○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계속거래계약중도해지권을 인정하고 위약금 청구범위를 제한</p> <p>○ 다단계판매원 모집광고 시 평균적인수당지급 수준 등 중요정보고지</p> <p>○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과</p>	<p>○방문판매법 제2조, 제4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28조, 제30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21조 (2002.7.1)</p> <p>○방문판매법 제34조 (2002.7.1)</p>	전자거래 보호과 ☎503-9012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4	○가맹사업법 제정·시행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협력하에 가맹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제시 ○ 가맹본부의 사업현황, 가맹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의무 부과 ○ 허위·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의무 부과 ○ 허위·과장된 정보 제공시 가맹금 반환 의무 부과 ○ 가맹사업거래과정의 공정화를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○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,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,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금지 ○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관련 업계의 사업자 단체에 설치 	○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2002.11.1)	유 통 거 래 과 ☎503-9511
5	○하도급법상 어음할인을 조정	○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연 9%의 어음할인을 적용	○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을 연 7.5%로 인하	○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시의할인율고시 (2002.6.10)	하도급기획과 ☎503-8894
6	○중요정보고시 확대적용	○ '업종' 별(21개 업종) 중요 정보 항목만 규정	○ 여러 업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할 '분야' (3개 분야) 별 중요정보항목을 새로이 규정	○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(2002.7.1)	표시 광고과 ☎504-9474

번 이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6	○중요정보고시 확대적용	○ '업종' 별(21개 업종) 중요정보 항목만 규정 ○ 적용대상 업종 : 21개 업종	<p>① '유전자변형물질' 분야 - 유전자변형 식품제조 · 판매업, 농수산물 생산 · 판매업자는 광 고시 유전자변형 물 질 포함사실을 명시</p> <p>② '상품권' 분야 - 상품권을 발행 · 판매 하는 자는 상품권 사 용후 잔액에 대한 현 금 환급기준 및 상사 채권 소멸시효(5년)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 기간이 경과된 상품 권에 대한 보상 기준 을 표시</p> <p>○ 고시적용 대상업종 조정 - 소비자피해 빈발 우 려가 있는 2개 서비 스업종 추가</p> <p>① '결혼정보업'의 중요 정보 ○ 제공되는 용역의 구 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○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</p> <p>② '영화업'의 중요정 보 : 상영등급 - '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업'은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,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</p>	○중요한 표시 · 광고사항 고시 (2002.7.1)	표시 광고 과 ☎504-9474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6	○ 중요정보고시 확대적용	○ 어학·번역·성인고시학원만 적용 ○ 중요정보항목을 표시와 광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○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TV광고에 대해 적용 ○ 모든 표시매체에 대해 중요정보항목을 표시	○ 『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』에 규정된 학원운영업모두고시적용대상에 포함 ○ 기존 3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항목 추가 - 학습교재업 : 교재 사용연령(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해 적용) - 체육시설운영업 :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- 건강식품업 : 부작용 발생 가능성 ○ 표시와 광고의 매체 특성을 고려, 중요정보항목을 ‘표시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’ 과 ‘광고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’으로 구분 ○ 2분 미만의 TV광고(지상파, CATV, 위성방송)는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 ○ 포장·용기·라벨·태그 등 다수의 표시매체중 2개 이상에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면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	○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(2002.7.1)	표시 광고 과 ☎504-9474

< 금융감독위원회 >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1	○ 상장지수투자 신탁제도 개선	<신 설>	○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상장지수펀드(ETF)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	○ 증권투자신탁 업법 제2조 ○ 증권투자회사 법 제2조 (2002.7.27)	증권 감독 과 ☎3771-5052
2	○ 간접투자신탁 허용	○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다만,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가능	○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(간접투자펀드) 허용 ○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% 이상 투자가능, 나머지 자산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	○ 증권투자신탁 업법 제 42조의 12 ○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 2 (2002.7.27)	증권 감독 과 ☎3771-5052
3	○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허용	<신 설>	○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(검용인가)	○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 2 및 제 84조의 28 ○ 증권업감독규정 제 1 ~ 15 조 등 (2002.7.1 시행)	증권 감독 과 ☎3771-5052
4	○ 유가증권인 수·공모 제도개선	○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○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○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○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%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○ 청약에서 상장 등록까지 3-4주 소요	○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○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○ 청약 배정방법의 자율화 ○ 시장조성가격을 90%로 상향조정하고,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○ 청약에서 상장 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	○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○ 증권업감독 규정 등 (2002. 8월 이후)	금융 감독 원 공 시 감독 국 기 업 금 용 제 도 팀 ☎3786-8442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련부서
4	○ 유가증권인수·공모제도 개선	<신 설> <신 설>	○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규 정비 ○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	○ 증권업감독규정 등 (2002.8월 이후)	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☎3786-8442
*초과배정옵션(over-allotment option) : 당초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					
5	○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	<신 설>	○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	○ 신용정보관리규약<별표1> (2002.7.1)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정보팀 ☎3786-8372
6	○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	○ 「요주의」분류자산의 1% 이상	○ 「요주의」분류자산의 2% 이상	○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13조의2 (2002.6.30)	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상호저축은행감독팀 ☎3786-8130
7	○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제도 개선	<신 설>	○ 상호저축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게시	○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17조 (2002.7.1)	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상호저축은행감독팀 ☎3786-8130
8	○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	○ 계약전 알릴의무 (고지 의무) 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○ 후유장해 담보기간 -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<신 설> ○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-철회신청일부부터 3일 이내 반환 ○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해지 가능 ○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-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<신 설>	○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○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부터 2년까지 보장 ○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○ 지체없이 반환 <삭 제> ○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○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	○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생명보험표준약관 (2002.7.1)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☎3786-8230

이 책자는 2002. 7월 이후 시행되는 부처별 경제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
종합·정리한 것입니다.

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, 국내홍보과(TEL:503-9245)